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희망을 잇다, 삶을 잇다. 주거복지 로드맵
	배포 일시	2018. 3. 26.(월) 총 7매 (본문 4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담당 자	• 과장 문성요, 사무관 노지훈 • ☎ (044)201-3352, 474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처	담당 자	• 처장 류동춘, 부장 강기관, 과장 선대영 • ☎ (055)922-3441, 3434
보 도 일 시		2018년 3월 2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6일(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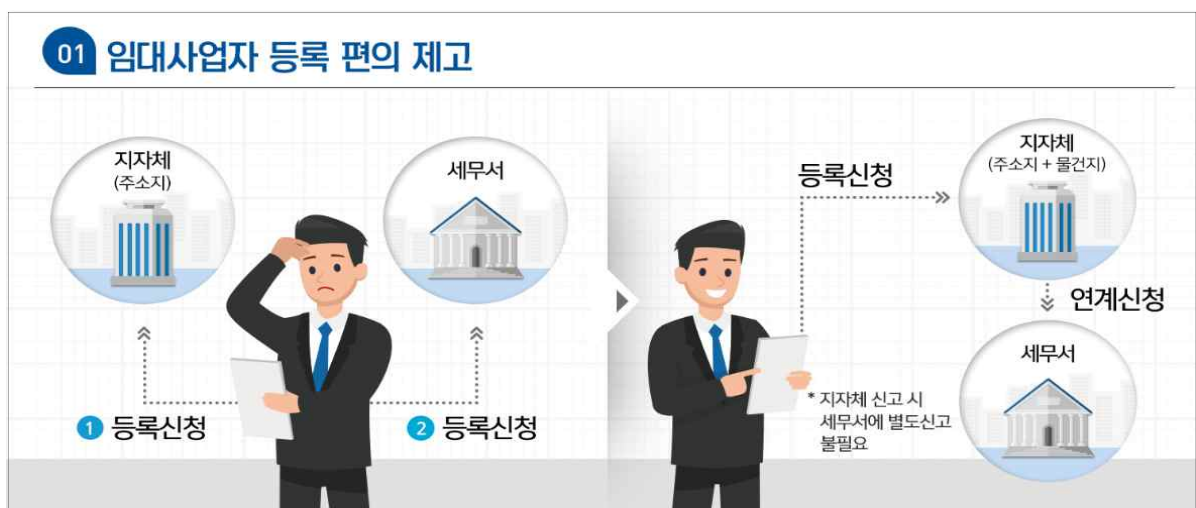
등록임대 시스템, 4.2일부터 개통

**사업자는 임대등록 편의성 높아지고,
 세입자는 등록임대 검색 쉬워지고,
 지자체는 등록임대 관리 편의성 높아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4.2일(월)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에서 관리해왔었다.
-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서 신설·강화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 ① 그간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 ②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그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신청된다.
- ③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 그간에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하여야 하나,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 하여,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B.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 제공

-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그간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C.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 지원

- 지자체는 그간에는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 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03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기능 제고



-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1670-8004, www.RentHome.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www.myhome.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www.RentHome.go.kr
공공임대주택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www.myhome.go.kr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노지훈 사무관(☎ 044-201-47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렌트홈 BI>



<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홈 | 회원정보 | 마이페이지 | 사이트맵 |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주택찾기
임차인 혜택
이용안내
알림마당

민원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민간임대주택양도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단순민원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도움말
법률조회
미리보기

안내

- 임대사업자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구분을 해주십시오.
- 대표자 세부사항을 모두 작성해 주시고, 대표구분이 되시는 분은 한분뿐입니다.
- 법인인일 경우, 사무소외에 사무소의 대표를 입력하시면, 변경신청시 자르 찾기가 좋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에서 호수를 입력하셔야 주택 출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에서 매입 임대 / 건설임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서 임대시작 일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임시저장

등록구분

개인 법인

사업자구분

선택하세요 ▼

신청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신청인명	<input type="text"/>	대표여부	<input type="checkbox"/>
주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선택하세요	▼
전화번호	<input type="text"/>	휴대폰번호	<input type="text"/>
이메일	<input type="text"/>		

임대등록시스템
이용안내

임대등록의
다양한 혜택

<지자체: 임대등록 관리 화면>

임대등록 시스템

Home

임대사업자 민원처리

임대사업자 등록부 관리

임대사업자 관리

임대차계약정보 관리

임대사업자 전국자료

임대등록시스템 관리

임대사업자/임대주택 통계

알림마당

마이페이지

알림열기
::강임대::님 환영합니다. | 로그아웃

임대등록 시스템

오늘처리예정 0 건
내 부서 미처리 건수 0 건
담당자 미지정 0 건
기간초과 미처리 0 건

- 임대등록관련현황

전입 2018-03-23	0건	전출 2018-03-23	0건	이월 2018-03-23	0건
소유자변동 2018-03-23	0건	인상률초과 2018-03-23~2018-02-23	0건	임대주택 미등록 2018-03-23~2018-02-23	0건
임대차 계약미신고 2018-03-23~2018-02-23	3건				

공지사항 + 더보기

- test1
- f
- 공무원포탈-공지사항
- 첨부파일 테스트21
- 공지사항 제목

접수기간

2018-03-13 ~ 2018-03-23

민원상태

접수

엑셀다운로드

조회하기

접수일	민원명	민원신청인	처리예정일	처리담당자	민원상태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더보기

방문접수 등록 바로가기

수기자료 등록 바로가기

<세입자: 등록임대주택 물색 화면>

렌트홈 입주가능주택 찾기

데어/전-월세 | 공공주택 | **민간임대주택** | 임대유형 아파트 > 등록구분 전세 > 전용면적 전세

아파트 | 등록구분 - 전세 | 전용면적 - 전세

표시영역 검색결과 (단지) **총 22건 검색됨**

주택유형	단지명	임대종류
아파트	성수2차	단기임대
아파트	성수대우2차	기업형임대
다세대주택	성수동아그린	단기임대
다세대주택	성수동아그린	단기임대
다세대주택	성수동아그린	단기임대
아파트	성수대우2차	기업형임대
연립주택	현대	준공공임대
연립주택	쌍용	준공공임대
다세대주택	성수동아그린	단기임대

창승기기

민간 임대주택 기본정보 (아파트)

단지명	쌍용	임대종류	단기임대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717 임대사업지구분 일반형 임대사업자		
주택유형	아파트	임대등록구분	법인
전용면적	60㎡초과~85㎡미만	임대의유기분	4년
동명칭	105동	호명칭	1002호

임대등록 시점에 따라 결과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3D | 로드뷰 | 공공가격정보

주택종류 범위

- 아파트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